

자료집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1부 용역 폭력 피해사례

경비용역 피해 사례- 우석순(기릉 분회)

상가 강제퇴거 피해 사례- 안종녀(두리반)

가로정비 피해 사례- 신진선(전노련)

플로어 질문 및 답변

2부 철거·경비 폭력 근절을 위한 제언

폭력을 동원한 강제퇴거에 맞서 싸우기- 미류(인권운동사랑방/주거권운동네트워크)

용역강패 고용하는 경비업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최인기(민주노련)

민간경비업이라는 우리식 '민경합작'의 불량품, 그들을 리콜하라- 김상철(진보신당 서울시당)

용산참사 이후 세입자는 무엇이 변했는가- 김종민(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한 민주노동당 특별위원회)

플로어 질문 및 답변

자료집 순서

노점 용역피해사례- 신진선(전국노점상총연합)

3P

폭력을 동원한 강제퇴거에 맞서 싸우기- 미류(인권운동사랑방/주거권운동네트워크)

12P

용역깡패 고용하는 경비업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최인기(민주노점상 전국연합)

18P

민간경비업이라는 우리식 '민경합작'의 불량품, 그들을 리콜하라- 김상철(진보신당 서울시당)

23P

용산참사 이후 세입자는 무엇이 변했는가- 김종민(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한 민주노동당 특별위원회)

32P

노점 용역피해사례

신진선 | 전노련 대외협력실장



▲ 2007년 고양시 용역반. 옷통을 벗고 자신의 문신을 과시하고 있다.



▲ 2003년 청계천행정대집행 때 하루 일당 4만원 받고 용역반으로 고용된 노숙인들. 이들은 부상당하더라도 아무치료도 못 받는다.

각 지자체별로 작게 3억, 많게는 31억 까지 어마어마한 예산을 책정해 용역업체를 고용한다. 용역업체는 일반적인 용역업체, 고엽제 전우회, 북파공작원 전우회, 장애인단체 등 각양각색이다. 그리고 이들 용역업체는 경호학과 대학생들, 노숙인 등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다.

노점 단속하는 용역반은 누구인가?



▲2001년 휴게소 노점단속을 나온 북파공작원 용역반. 이들은 경찰도 통제 못한다. 노점단속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올려, 각 지자체로부터 언제나 러브콜을 받는다. 현재(2008년) 광명시와 계약하여 활동 중이다.



▲ 2008년 광명시. 20대 초반의 나이 어린 학생들. 여학생들도 있다. 이들은 일당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받고 일한다.

각 지자체별로 작게 3억, 많게는 31억 까지 어마어마한 예산을 책정해 용역업체를 고용한다. 용역업체는 일반적인 용역업체, 고엽제 전우회, 북파공작원 전우회, 장애인단체 등 각양각색이다. 그리고 이들 용역업체는 경호학과 대학생들, 노숙인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다.

무지막지한 용역반들의 노점단속



▲ 2003년 안양. 떡볶기와 순대를 파는 부부노점상은 충격적인 노점단속을 당했다. 노점상 장모씨는 단속반 직원4명이 트럭에 있는 가스통 줄을 끊고, 음식물과 조리기구 및 기타 집기를 강제로 압수했으며, 팬티만 입은 채 아내를 밀치고, 자신을 옆의 풀숲으로 끌고 간 뒤, 속옷까지 벗어 성기를 노출하며 위협했다고 했다. 당시 장모씨는 “죽고 싶다”고 이야기 하며 정신적인 충격을 하소연했다.



▲ 2004년 광명시. 용역반원 300여명이 노점상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다. 용역반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행한 폭력행위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들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더욱 폭력적으로 단속한다. 합법적으로 이들에게 살인면허를 주고 있는 셈이다.

무지막지한 용역반들의 노점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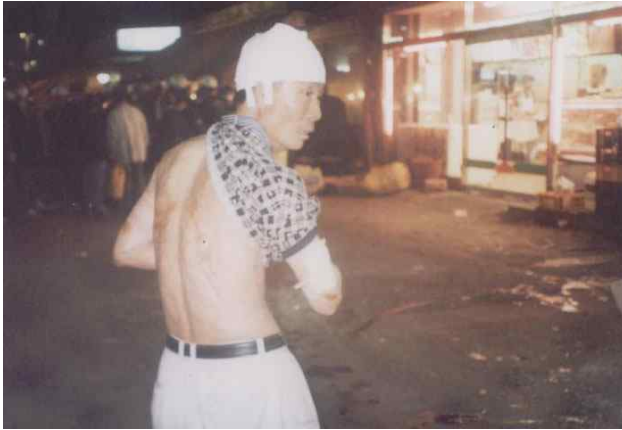


▲ 2005년 부천. 용역반원들이 사용한 물품. 이들은 가스총과 군용칼, 식칼, 가위 등을 소지하고 노점단속을 했다. 이들은 사이다병으로 여성노점상의 머리를 강타하여 뇌수술을 받게 했고 임신 3개월의 여성노점상을 포장마차고 덮치는 등 그야말로 ‘살인’ 적인 노점단속을 자행했다.



▲ 2005년 용인시. 쇠파이프로 무장한 용역반원 6명에 의해 노점상 2명이 집단 폭행당했다. 머리가 찢어지고, 온몸에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다.

무지막지한 용역반들의 노점단속



▲ 2004년 광명시. 용역반원들에 의해 중상을 당했지만, 다시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 2005년 신촌. 손수레 4대 철거 과정에서 항의하는 노점상에게 용역반들은 튀김 기름을 들이 부어 화상을 입혔다. 이를 뒤 또다시 200여명의 용역들을 동원해 노인, 여성 가릴 것 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노점 수레를 강제 철거하였다.

무지막지한 용역반들의 노점단속



▲ 2008년 4월 3일 광명시. 300여명의 용역들이 광명사거리 노점상들을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노점상을 포장마차로 짓이겨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혔다. 119에 후송되는 중이다.



▲ 2008년 2월 22일 대구 두류종합시장. 강제철거과정에서 팔기위해 만들어 놓은 떡볶이가 땅에 버려지자 서러워 울음을 터트리고 있다. 자신의 생존이 땅에 내동댕이쳐진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 2008년 3월 75세 호떡 할머니. 신림동에서 장사를 하던 할머니는 몸이 아파 장사를 못하다 생활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장사를 나왔는데, 그날 관악구청에서 단속을 했다. 단속반원은 별로 저항하지도 않는 할머니를 심하게 뒤로 밀쳤고, 할머니는 12흉추 방출성 골절(척추 뼈가 내려앉음), 왼쪽 팔 골절이라는 중상을 당했다. 그러나 할머니를 밀친 구청직원은 다친 할머니를 방치한 채 물건만 싣고 가버렸다.



▲ 2008년 11월 15일 대구 동성로. 동성로는 대구의 명동 같은 곳이다. 저녁시간에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머까지 휘두르며 노점단속을 했다. 이날 용역들은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쫓겨나 다시피 물러갔다.

우리를 낭떠러지로 밀어내지 말아주십시오



▲ "정부, 분당구청, 미래에셋증권 관계자께서는 힘없는 한 가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년 전 자영업 실패의 아픔을 안고 4가족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하여 떡볶이를 팔아서 자식들 양육과 생계를 이으며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가장이지만 자식들만은 저처럼 힘들게 살게 하지 않으려고 힘들지만 자식들 교육은 시켜주어야만 하겠기에 3년 전 이곳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중략-----

단속반들은 “당신이 장사를 할 수 있게 그냥 놔두는지 두고 보라” 는 등 위협하고 횡포를 부려 저는 하루 하루 낭떠러지로 떠밀리는 처지입니다. 정부와 분당구청, 미래에셋증권 관계자께서는 저를 낭떠러지로 밀어내지 말아주십시오. 저도 살고 싶습니다.”
(2008년 3월 13일 분신을 기도한 노점상 전씨의 영영읍 트럭에 걸린 펼침막 내용. 다행히 전영씨는 는 생명을 잃지 않았다.)



▲ 2007년 고양시. '당신 고생시켜 미안해' 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근재 열사. 고양시에서 부부가 함께 붕어빵 장사를 했던 이근재 열사는 계속되는 폭력적인 노점단속에 생계가 막막해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폭력을 동원한 강제퇴거에 맞서 싸우기

미류 | 인권운동사랑방, 주거권운동네트워크

1. 강제퇴거와 폭력의 현실

1998년 5월, 명동성당 교육관에서 ‘철거 폭력, 그리고 적준. 이대로는 안된다!’ 라는 제목의 워크숍이 열렸다. 그리고 같은해 11월,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철거범죄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를 펴내며 ‘다원건설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였던 김승훈 신부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폭력 앞에서 피눈물을 쏟는 악순환을 우리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막아냅시다.” 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2011년,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적준의 후예들은 살아있다. 87년 재개발지역의 철거 작업을 철거용역업체가 대행하게 되면서 ‘입산’으로 시작한 이들은 ‘적준’으로 94년경 재개발 현장을 거의 독점하게 된다. 90년대 후반부터 핵분열을 하여 현재 서울 지역 재개발 현장은 ‘삼오진’, ‘참마루’, ‘호람’, ‘비조’, ‘다원’, ‘유피’ 등 수많은 업체들이 나누어 장악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과거 ‘용역깡패’의 역사를 충분히 계승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개발 이익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한 폭력의 집행자라는 점에서 여전히 적준의 후예들이다.

재개발 현장에 나타나는 용역업체들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나 ‘경비업’ 허가를 취득한, 또는 둘 모두의 허가를 취득한 업체들이다. 물론 이들의 업무는 하늘 높이 솟아올라야 하는 고층 건물의 순결한 탄생을 위해 기존의 건축물들을 남김없이 철거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비어있는 채로 사라질 날을 기다리는 건축물들을 경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적준의 후예들이 하는 일은 이렇게 말끔하지가 않다. 이들은 건축물을 비우기 위해 기존의 삶들을 남김없이 철거하고, 개발 사업을 경비하기 위해 마을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게 한다. 폭행, 위협, 협박, 주거침입, 성추행, 성희롱, 손괴, 영업 방해, 오물 투척, 방화 등 이들이 사용하는 수단은 체계적이면서도 다채롭다. 일관된 공통점은 이렇게나 많은 불법 행위들이 법의 처벌을 잘도 피해간다는 것이다.

2. 법이 품은 불 ‘법’

법치주의는 치열한 법의 성찰과 함께 가야 한다. 인권을 손쉽게 침해할 수 있는 권력에 맞서는 보루로 법이 역할할 때 우리는 법으로 서로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치졸한 법의 변명이 되기 쉽다.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는 더욱 그렇다. 권력을 부양하는 법, 그리고 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 개발 현장에서 법의 실체는 투명하게 드러난다.

개발 사업들은 저마다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 구청은 개발 사업 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시청은 인가한다. 구역이 지정되면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곧이어 조합을 설립한다. 조합은 개발 사업의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인가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원들 사이의 손익 계산이 끝나면 착공에 들어간다. 이렇듯 명쾌한 절차는 명쾌한 결과를 낳는다. 원주민 재정착률 20%. 지자체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은 전혀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 물론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언제나 환영된다. 추진위가 꾸려지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도 같다. 그러나 조합 설립을 전후한 시기는 분쟁이 매우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개발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

의 개발을 할 것인지 구역 지정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상이몽의 현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나마 이 시기의 분쟁은 소유주들이나 가능하다. 세입자들은 조합에도 전혀 끼어들 자리가 없다. 구청은 세입자들의 질이나 민원을 모두 조합으로 돌린다. 조합은 문을 걸어잠근다. 시간이 흐른다.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한다. 시공사가 조합을 선정한다는 말이 더욱 정확할지도 모른다.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다.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이 진행되고, 사람들도 처분되기 시작한다.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떠나야 한다. 70%가 넘는 세입자들을 위해 지어지는 임대주택은 17%밖에 안된다. 그나마 보증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법’의 이름으로 진행된다.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만 충족한다면, 관리처분계획 이후의 거주는 ‘불법’이 된다. 현재 이 조항은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조항만 위헌 결정이 나도 세입자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딱 한숨만큼이다. 법은 세입자들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두리반의 현실이다. 두리반 일대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앞서 설명한 대부분의 ‘개발 사업’과는 다르다.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을 독려하기도 하는 계획이고, 도시미관을 위해 삶이 스러진다는 점에서 ‘개발’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모든, 그리고 개발 사업 구역의 세입자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배제되는 권리.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배제된다는 것은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두리반의 점유는 불법이 된다. 용역업체는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 현장에 투입된다. 심지어 법원의 집행관과 함께 온다.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물론 용역업체의 모든 행위가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법이 미치지 않는 개발 현장에 법으로부터 보내진다. 법이 미치지 않아 법의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법은 불법을 품는다.

3. 강제퇴거금지법

문제는 개발 현장이 법이 미치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 곳에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떠날 수 없어, 하나둘 떠나는 동네에 남아 불안과 두려움으로 질식할 것 같은 동네를 지키고, 떠날 수 없어 망루에라도 오르게 된다.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떠나야 하는 상황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협의나 협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그 곳의 거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발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개발 이익의 수혜자들은 협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법이 충실히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그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것을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는 ‘법’을 기다린다. 협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 이들에게 거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할 강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은 정의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강제퇴거금지법만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당연하지만 언제까지 법의 문 앞에서 내쫓기고 다치며 죽어갈 수 없다. 강제퇴거금지법은 새로운 문이다. 인권의 실현을 위해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의 의무를 밝힌 법이며 개발이 거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환하려는 법이다. 모든 거주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재정착의 권리를 밝히고 이를 보장하지 않은 퇴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퇴거 과정을 집행하는 자들과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공무원의 책임을 밝히는 법이다.

강제퇴거금지법은 모든 거주민의 재정착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정적인 점유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주거권의 기본 요소다.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주와 퇴거는 외적 요인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전후로 안정적인 점유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재정착은 개발 사업의 시행 중이나 완료 후에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자원이 더욱 부유한 사람들에게로 이전되는 고리를 끊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여기에는 주거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대체상가 등의 대책이 포함된다. 또한 퇴거와 재정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협의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도 강제퇴거금지법의 내용이다.

물론 불법을 품은 법의 뒤에 버티고 있는 것은 ‘재산권’ 이라는 견고한 믿음이다. 최근 장기화되는 ‘전세대란’ 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발목을 잡은 것이 재산권이다.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소유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입자들의 권리는 침해되어도 되는가. 우리는 소유주거나 세입자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우리가 저마다의 역량을 키우며 저마다의 삶의 방식을 가꾸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 안정적인 거주와 소득활동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다. 법이 누군가 소유주라는 이유로 안정적인 점유를 보장하면서, 세입자라는 이유로 안정적인 점유를 포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인권침해다.

강제퇴거금지법은 세입자들이 안정적인 점유에 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작은 발판을 만들자는 것이다. 누군가의 퇴거를 수반하는 개발이 불가피한 것인지 또는 거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를 묻고, 이로 인해 누군가 퇴거해야 한다면 재정착에 필요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라 인권의 존중이다. 사람으로 존중받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더는 생기지 않으려면, 세입자의 재정착 대책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

4. 강제퇴거금지 ‘법’ 을 위한 우리의 싸움

강제퇴거금지법만으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법’ 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싸움이 권리를 증명한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운동은 권리를 불러내는 운동이다. 그래서 다시 지금 여기의 개발 현장, 여전히 법 밖에 있는 현장에서의 싸움이 중요하다. 법이 적준의 후예들을 우리에게 보낸다면, 우리는 법의 밖에서 ‘법’ 을 향해 그들과 싸우는 수밖에 없다. 용역업체의 폭력과 관련해 현행법의 체계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에 필요한 준비 등은 아래 자료로 첨부했다. 물론 법보다 가까이 있는 폭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제각각 그리고 함께 정해나갈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의 불복종저항이, 쫓겨날 수 없는 이유를 잘 보여줄수록, 요구하는 재정착 대책이 얼마나 긴요한지 잘 보여줄수록, ‘법’ 은 가까이 올 것이다.

* 첨부 (개발에 저항하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 <그 많던 동네는 어디로 갔을까>(2008) 에 수록된 글입니다)

경비업법의 문제점

1)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체에게 대집행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¹⁾

개발과정에서의 행정대집행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해 대행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에 의하여 수행되는 강제집행이다. 그러나 강제철거 과정에서 행정청은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철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 정한 “...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 라는 규정에 근거한다.

행정대집행현장에 경비용역을 동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지적되고 있다. 즉,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등으로 그 업무의 유형이 제한되어 있고, 강제철거업무는 물론 철거민을 강제 퇴거시킬 행위는 업무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제5항에서는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주택재개발·재건축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경비원배치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재개발과정에서의 경비용역업체의 사용근거로 제시하기도 하나, 이는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한 규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경비업자에게 행정대집행을 위탁한다는 것은 법률의 한도를 넘는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의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집행업무를 국가기관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내용을 규정하여 영 한다는 입법론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2) 경비용역의 실태와 규정²⁾

경비원이 될 수 없는 미성년자나 폭력전과자가 경비원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있다. 법은 “18세 미만인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또한 시행규칙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1)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2005,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인용.

2) 민병덕,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법률개선 방향」을 요약 정리.

및 출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제3항) 그러나 평택 미군기지 시설 설치현장에서 만17세의 대학생이 동원된 예가 있고, 수사기관의 조직폭력배 수사결과에서 폭력전과가 있는 조직폭력배가 경비원으로 동원된 예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이는 경비업체가 경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및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관할경찰서장이 신고를 받고 경비원 자격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무자격자의 배치폐지를 명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법은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제18조제1항),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주택재개발·재건축 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4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경비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경찰관서장이 단지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을 뿐이다.

경비업법에서 허용한 장비 이외에 쇠파이프, 소화기 등 불법무기 내지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장비를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경비업법에는 처벌조항이 없어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경비원이 현장에 배치될 때에는 복장을 통일하고 경비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나 이러한 복장을 갖추지 않고 신분증명서 등을 부착하지 않고 현장에 배치되고 있다. 그러나 신분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신분증명서를 현장에 배치할 때 착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관한 조항이 새로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부분도 역시 제재 내지 처벌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법개정도 필요하다.

3) 경비구역의 인권 침해에 대한 법률 대응 방안³⁾

내용	방법	대상	관련 근거	준비해야 할 것	신경 써야 할 것
집단적 폭행, 협박	경찰서에 형사 고소 / 해당 경비원, 경비업체 사장, 용역과 계약한 관리자 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폭행, 협박을 입증할 자료 ; 피해자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다	진술서는 현장에서 바로! 머리로 기억하기보다는 사진으로 기억하라! 경비원 명부(경비업체 사무소)와 경비원

3) 미류, 2008, 동자동 4구역 세입자 2차 교양 자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 경비원, 경비업체, 관리자 등 / 경비업법 제26조	친 곳 사진, 폭행장면 사진 또는 영상, 폭행 가해자의 사진 등	배치 신고서(경찰서)를 미리 확보(정보공개청구 등)해두라!
성추행, 성희롱	형사 고소 / 행위를 한 경비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	경비업체 사장이나 현장책임자, 행정청 직원 등이 현장에 있었거나 행위를 지시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확보해둘 것
	손해배상 청구 / 경비원, 경비업체 등		
경비업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허가 취소, 관할지방경찰서에 진정, 고발 등 / 경비업체 / 경비업법 제4조, 경비업법 제7조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인력, 자본금, 대표자와 임원 경력 등)을 만족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자료	이 자료들은 정보공개 청구나 국회의원 등의 자료요구를 통해 구해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경비업체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관련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면 되는데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좋다.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했음을 입증할 자료 - 각종 폭력행위와 철거행위 등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 그 외 경비업법 조항들	'자유와 권리 침해', '경비업무가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 침해', '소속 경비원의 결격 사유' 등을 입증할 자료	
경비원이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때	고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경비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비업체 사장, 현장책임자, 지시자 등 / 경비업법 제15조의 2 제2항	위력 과시와 물리력 행사를 입증할 증거 (위 폭행 협박의 자료)	
배치하기 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경찰서장이 배치 폐지명령을 내리도록 진정, 촉구 등 / 경비업체 /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신고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 배치 24시간 전에 신고가 됐는지 확인해야 함
경찰서장이 배치폐지 명령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경비업체 / 경비업법 제 18조 제3항	경찰서장의 배치 폐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	경찰서장이 일단 배치 폐지명령을 내리고 나서 고소고발이 가능
기타	과태료 처분 / 경비업법 참고		

용역깡패 고용하는 경비업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4)

최인기 | 민주노련 사무처장

- 1 노점상, 철거민의 인권유린 현장
- 2 경비업법상 철거용역반의 의무
- 3 경비업법상 철거용역반의 자격을 둘러싼 문제.
- 4 기타 사항들
- 5 왜 현장에 철거용역반원을 폭력적으로 투입할까?
- 6 경비업법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 7 글을 정리하며

1. 노점상, 철거민의 인권유린 현장

어느 사회든 도시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계획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도시빈민층의 경제적인 조건과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전이데올로기를 앞세운 물리적이고 강제력을 앞세운 일방적인 정책은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낳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서울거리의 디자인 사업이 확대되고, 노점관리대책이 실시된 이후 서울지역의 노점상들은 약 3/1 가량이 줄어들었다.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반까지 ‘두리반’ 근처의 민주노련 서부지역의 노점상에 대해 용역깡패들의 만행이 자행이 되었다.(2010년 2월 20일 새벽 0시 신촌 그랜드마트와 한국전력 앞 포장마차로 마포구청직원과 용역들이 폭력단속 진행하여 용역 200명과 지게차까지 동원한 노점폭력단속으로 마차 15대가 파손철거 당했다. 이밖에도 비슷한 시시 용역 400명과 지게차까지 동원하여 마차 5대가 파손 철거되고 노점상 7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의 강제노점단속과 폭력철거과정은 역시 불법 투성이었다. 행정대집행전 적법한 계고를 해야 함에도 어떠한 사전 통보 없이 단속을 진행한 점, 그리고 용역들이 깡패처럼 복장도 갖추지 않고 마포구청의 관리 감독 없이 폭력적인 단속을 진행한 점, 마차철거과정에서 포장마차 뿐 아니라 개인물품까지 모조리 쓸어 가버린 점등. 마포구청은 아무리 노점상이 불법이더라도 이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강제노점철거를 진행 하였던 것이다. 마포구청 건설관리과에 따르면 2009년 전체 예산 6억 5천중에 3억 원을 노점상 단속만을 위한 용역고용에 사용하였으며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200%인

4) 이글은 필자의 글 가운데 참세상 2005.11.01 깎두기 형님들과 행정대집행 법, 2007.02.28 서울시는 용역깡패부터 처리하라, 2009.01.25 용산 참사 현장에 또 누군가가 있었다, 민중의 소리 2009년 2월 16일 용역깡패 고용하는 경비업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2006년 9월 4일 112개 단체 가 참여한 경비용역에 의한 인권침해 증언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상한 2억 원과 기타 1억을 더 책정하여 2010년 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약 6억 원을 노점상 단속을 위한 대규모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쏟아 부었다.

뿐만 아니라 용산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개발세력에 의해 세입자뿐만 아니라 가옥 주들 까지도 목숨까지 내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눈 붙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은 커녕 임시이주대책이나 재정착 대책을 보장받지 못하고 미비한 법제도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당 구청은 조합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려는 노력보다는 미흡한 법률 뒤에 숨어 무책임으로 일관하거나 건설회사와 조합의 편만 들고 있다.

현행법상 철거민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명도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래도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게 되어있으며, (노점상의 경우 몇 차례 계고장을 발부하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함) 몇 차례 계고를 통해서 철거를 집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철거용역반원을 고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거리의 노점상과 재개발에 저항하는 철거민들은 용역깡패와 전쟁과도 같은 충돌과 마찰을 빚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뉴타운 재개발 또는 거리디자인화 사업이라는 거창한 구호의 이면에는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노점상의 생존권이 한순간에 두 동강나는 피눈물과 고통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2. 경비업법상 철거용역반의 의무

경비용역업체의 업무는 다양한데 이 가운데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 사업을 위한 강제철거현장, 쓰레기매립장 등 특수시설 건설현장, 비정규직 투쟁현장 및 노사분규 현장, 노점상 단속 현장 등에서 시설경비업무를 비롯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비업 법에 따르면 경비원의 의무에 대해 경비업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경비원은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 2 제2항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의무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업체의 업무 추진이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행동과 폭력 행사가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용산참사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철거민 참사가 터지기 며칠 전부터 이미 용산 4구역 현장에서는 철거용역반원들과 철거민들 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있어왔으며, 수십 명이 몰려다니며 철거민들을 괴롭히거나 폭행, 협박을 가하는 행위가 빈번히 있어왔다. 철거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영업을 하는 식당에 들어와 문 닫을 때까지 앉아있거나 가게 문 앞을 어슬렁거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심지어 가게 앞에 음식물쓰레기나 오물을 투척하여 장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살인진압이 있기 전날에도 낮부터 새벽까지 3층에서 불을 지펴 철거민들을 괴롭혔다. 뿐만 아니라 용산참사가 터진 직후 2009년 2월 9일 검찰은 용역업체가 합동진압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결국 참사현장에 철거용역반원이 직접 관여했던 것이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3. 경비업법상 철거용역반의 자격을 둘러싼 문제

다음은 이를 뒷받침하는 경비업법 상 자격 요건이 되지 못하는 자들을 동원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비업법을 살펴보면 ‘18세 미만인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한

정치산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 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 조항일 뿐이다. 과거의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2003년 청계천 복원공사를 추진하며 서울시에서는 장애인과 노숙 인을 철거현장 전면에 동원하는 예가 있었다. 서울역등 역 주변의 인력시장과 동원브로커들을 통해 전날 수백 명의 노숙인 들을 조달 하였으며 심지어 2005년 경기도 부천의 노점상경우 지역의 어용장애인 단체를 통해 이들을 철거현장에 동원하여 노점상과 노숙인 그리고 장애인과의 상호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약자간의 충돌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시설 설치현장에서도 만17세의 미성년자가 동원된 예가 있으며, 2007년에는 경기도 구리지역의 조직폭력배 수사결과에서 폭력전과가 있는 조직폭력배가 노점상 단속현장에 용역반원으로 대거 동원된 사례도 있었다.

4. 기타 사항들

이밖에도 경비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고용된 자들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경비업자가 고용된 자들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 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적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무소 및 출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에서 법에서 정한대로 신고 사항만 제대로 감시하고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조직폭력배가 용역깡패로 둔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밖에도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신임경비원의 경우에는 ‘예절 및 인권교육’ , ‘장비 사용법’ 등 최소 9개 과목 28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법 조항에는 ‘허용한 장비 이외에 물품을 휴대해서도 안 되고 현장에 배치될 때에도 복장을 통일하고 경비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고 되어 있다. ‘경찰청장이 연도별계획까지 수립하여 경비원 교육 실태를 감독’ 하도록 법률 개정이 되었음에도 법률에 따라 지켜지는 것은 미미할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이 준수 될 일이 없다 왜인가?

5. 왜 현장에 철거용역반원을 폭력적으로 투입할까?

결국은 폭행 및 경비업법 위반, 경찰 지휘관은 공동정범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폭력적으로 철거용역반원을 투입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하나는 이들이 법을 어겨도 처벌조항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경비업법을 살펴보면 “경비업체가 경비원을 교사하여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폭행, 협박, 상해를 한 경우 경비업법상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단지 그 교사자인 경비업체의 대표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미온적인 법 규정이다. 실질적으로 법 적용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용산의 경우 집행유예로 그쳤으며 경기도 풍동지역에서 철거농성의 진압 과정에서 화염병 투척과 새총을 발사한 철거용역반 2인에 대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데 그쳤던 판결을 보면 경비업법 상의 처벌규정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 하나는 짧은 기간에 단속과 철거의 성과를 내기 위함으로 보인다. 우선 철거용역업체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적게는 수억에서 보통 수십 억 원에 달한다. 그렇게 돈을 쓰더라도 사업을 빨리 끝내는 것이 개발이익을 높이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 용산참사의 사례를 또 들 수 밖에 없는데 용역업체와의 계약서에 따르면 사업 승인이 떨어진 시점에서 철거용역업체가 조합에 지

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철거를 완료하려면 한 달 안에 모든 철거를 끝내야 했다. 당연히 철거용역업체들이 기일을 넘겨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제철거에 나서게끔 만든 것이다. 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공사 내용에 ‘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 활동’이 포함돼 있는 등 건설자본의 사주 하에 용역업체가 철거민을 몰아내는 활동이 계약 관계에 의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들은 해당 자치단체나 조합에 고용되는 순간 최대한 짧은 순간에 큰 단속과 철거효과를 얻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과를 통해 다음번 공개입찰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기에 일단 무차별적으로 철거용역반원을 동원하여 최대한 큰 성과를 내기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6. 경비업법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첫째,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경비업법 상의 처벌 조항이 너무도 미약하다는 것을 살펴봤고 결국 이 말은 처벌조항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결국 경비업체가 경비원을 교사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폭행, 협박, 상해를 한 경우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원은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이고, 단지 그 교사자인 경비업체의 대표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미온적인 법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경비업법의 벌칙규정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을 적용하게 될 것이지만 일반경비업체의 경비업무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폭행, 협박, 감금, 재물손괴 등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반드시 신설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검사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형법이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리감독의 강화와 개선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 경비업법에 의해 고용되고 있는 경비원들의 실체는 누누이 강조했듯이 깡패들이며 이들은 합법적인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조직폭력배의 공공연한 자금줄이 되고 있다. 조직폭력배들의 활약이 경비업법으로 포장되어 사회적 폭력을 용인하는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바로 국민이 신뢰를 해야 할 관할행정관청과 경찰서다. 그 관리 감독을 충실히 수행해도 모자랄 판에 사실상 수수방관 은폐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커넥션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거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셋째, 경비원의 자격과 권한 제한에 대한 정확한 법률 적용이 있어야 한다. 경비업법 적용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현장, 노사분규 현장에서는 아예 편법으로 경비업체 직원을 임시관리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 세종병원의 경우 38명의 철거용역반원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조합원들을 감금·폭행하고 성희롱을 자행하며, 소화기와 소화전 분사, 게시물 절취 훼손, 정상적인 노조활동 방해하였다. 심지어 만취한 상태에서 조합원들을 폭행하여 크고 작은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문구용 칼을 휘둘러 조합원들의 옷을 찢는 만행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철거용역반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현장을 통제하려는 것은 경비업법을 피해가려는 일종의 꼼수인 셈이다. 이들을 수사대로 활용을 하거나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노점단속 현장에는 해병대전우회 혹은 고엽제 전우회 등의 단체를 통해 노점상 단속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경비업법이 적용되어 경비원의 자격, 교육, 장비, 복장, 그리고 경찰서장의 감독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업체는 주민들이 모두 퇴거하기 전에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 법안을 신설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집단적 폭력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고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악명 높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업체의 등록을 취소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제도적으로도 조합과 철거업체, 경비업체와의 계약의 내용과 범위, 시기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경비업법의 법률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정과 정확한 법시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하여 경찰청에 대한 국정조사 등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7. 글을 정리하며

이밖에도 노점상과 철거민을 단속하고 철거하는데 적용되는 ‘행정대집행’ 법을 들 수 있다. 노점상 철거민들은 ‘강제철거 법’ 이라고 부르는 이 ‘행정대집행’ 은 국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이다. 그러기에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하지만 이법을 직접 집행하는 곳 가운데 한 곳은 용역경비업체인 민간사설업체다. 특히 이법은 공권력과 용역깡패를 투입하는데 들어간 제반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법적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찰은 ‘직무집행법’ 등에 의해 사건현장에서 일방적으로 용역반의 편을 들고 있으나 ‘행정대집행법’ 을 통하여 더욱 노골적으로 철거 현장이나 단속에 개입을 하고 있는 상태다.

UN 인권위원회가 작성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따르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조2항>은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전형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폭력적 노점단속 과 철거민들에 대한 강제철거는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를 규정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조2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하지만 법이 있으되 쓸모없는 법이란 것을 걸어놓고 결국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요즘 조폭 영화를 보면 깡패들의 직업은 철거용역반이다. 이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개발 현장이나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모습이다. 용역반원을 동원하여 아무렇지 않게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는 현실을 막는 방법 가운데 경비업법과 행정대집행법을 둘러싼 몇 가지 개정안을 살펴봤지만 이는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도시빈민의 과격함을 지탄하고 아무렇지 않게 힐난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과격함이 사실은 유일한 대안이 지 않는가?

민간경비업이라는 우리식 '민경합작'의 불량품, 그들을 리콜하라

김상철 | 진보신당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국가이다. 소수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으로써 지켜야 할 규범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알면서도 추진위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구성되면, 사업구역 안에는 불법이 판친다. 서로 편을 가르고, 이권에 휘둘리며,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강문(가드탑 시큐리티 대표), 2010 재개발 재건축 오피니언리더에게 듣는다, 도시재생신문, 2010.12.24.)

1. 민간경비업체, 니 정체를 밝혀라

아무래도 이상하다. 철거용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비업체가 왜 재개발 현장에 나타날까. 통상 그들의 까만 양복은 곱고 약해보이는 연예인 옆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부각 시켜주는 존재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집을 둘러싼 사투의 현장에도 등장했다.

옆의 그림은 노순택 작가의 ‘솜털과 오렌지와 깡두기’ 라는 작품이다. 작가는 ‘노가다 근육조차 채 자리 잡히지 않은 이 용역아이의 팔뚝을 보니 눈이 시큰하다. 정말 소년 팔인데...’ 라고 말을 붙였다.

그렇다.

이처럼, 철거현장에 등장하는 깡두기 아저씨들은 외양에서부터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밝힌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시키는데도 하고 일당 받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재개발 조합 총회장에 등장하는 경비업체는 다르다. 민간경비업체가 자신이 벌어먹고 사는 정규직장이고 ‘경비지도사’ 라는 자격증이 발행된다. 한국경비지도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만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가 2010년 6월 현재 2,186명에 이른다(2007년에는 1,685명이어서 3년 사이에 501명이 늘었다. 이 수치는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늘어난 인원의 절반이 넘는다).

‘경비업법’이라는 법령에 의해 발행되는 **법정 자격증**이다.

물론, 한국경비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서울지역 경비업체가 691개 업체에 이르니 한 업체 당 10명씩만 잡아도 6,910명 즉 최소 무자격자가 자격증 소지자의 3배 이상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경비업 아저씨들은 그냥 **알바생**이다).

지난 2002년 서울경찰청은 소위 ‘재개발 조폭’ 112명을 잡아 입건했다. 그리고 2005년 수도권 곳곳에서 ‘재개발 조폭’ 이 출몰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의 빙뜯기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불법적인 약탈에서 **합법적인 약탈**로 전환된 것이다.

그 와중에 재개발 시행사와는 다른 경비업체가 재개발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지킬 일이지, 왜 재개발 현장이냐고!

실제로 ‘피엠 게이트웨이’ 라는 회사가 ‘헬로잡’ 이라는 취업사이트에 서울/경기 지역 신입, 경력자 경호원 모집 공고를 낸 바 있다. 그 회사가 밝힌 모집직종은 바로 **“예체능/레포트”** !

그래, 바로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비업체의 모습이다. 연예인을 보호하는 회사니 넓은 의미에서 예체능에 속하는 것 아니겠나. 그리고 자격조건도 매우 후하다. 학력, 경력, 전공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다만 남자는 키 180센티 이상, 몸무게 80킬로 이상이어야 하고, 여자는 키 165센티 이상, 몸무게 45킬로 이상이어야 한다. 게다가 남자의 경우엔 “100킬로 이상 뚱뚱하신분도 환영” 이라는 단서도 붙었다.

영? **레포트 업종**이라서 그러나? 라는 생각이 얼핏든다. 결국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들의 말을 들어보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 회사 홈페이지를 가봤다. 그리고 사업실적을 살펴보았다. 몇 개의 통상적인 경호나 시설업무가 눈에 띄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표가 나왔다.

- 2010년 <04월01~05일>삼산1구역 안전및 질서유지 시설경비
- <04월07일>중암 **상가 시설경비
- <03월27일>응암3구역 창립총회 행사장경비
- 2009년 <02월07일>홍은5구역 창립총회 행사장경비
- <02월03일>흑석1구역 창립총회 행사장경비
- <12월19일>가제울6구역 시공사선정총회 행사장경비
- <12월 17일> 대림건설 사업설명회 행사장경비
- <12월 5일 > 괴안1구역 주주총회
- 2008년 <10월 28일>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대위원회의
- <10월 27일> 용산역전면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10월 23일> 만리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주민총회
- <10월 16일> 용두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 <9월 27일> 면목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 <9월 26일> 소사본5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주민총회
- <9월 26일> 수색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 <9월 18일> 방배2-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 <9월 15~18일> 아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시설경비
- <9월 12일> 녹번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 총회
- <9월 4일> 녹번 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업설명회
- <8월 29일> 금호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동호수 추첨
- <8월 29일> 한강맨션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8월 20일 ~ 25일> 박달1동사무소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 총회
 <8월 8일>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주민총회
 <7월 27일 ~9월 5일 > 화곡 3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시설보안
 <7월 23일> 홍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
 <7월 2일> 종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5월21일> 용인7구역 주택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
 <4월 18일> 신갈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정기,시공사 선정 총회
 <4월 11일> 인덕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 총회
 <4월 9일> 흑석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현장 시설경비

앵? 무슨 재개발 지역 총회에서 레포트 대회라도 있었던 게냐!

현재 민간경비업체는 약간은 모호한 형태로 존재한다. 다른 한편에는 요인 경호라는 우리 이미지 그 대로의 모습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의 탐정이나 우리의 ‘홍신소’ 와 같은 업무도 한다. 그리고 대규모 인력으로 장소를 통제하는 행사 진행요원들을 보내기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얼굴의 민간경비업체를 단순히 철거과정에서의 ‘폭력 사용’ 을 근거로 깎두기 공장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많은 수가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엔 약간의 사회적 필요가 많은 사회적 불필요를 정당화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는 민간경비업체에 있지 않다.

2. 주장과 사실의 맞대면: 현실이 말하는 방법

철거 당사자와 민간경비업체들의 입장을 대비시키면 묘한 결과가 나온다. 철거 당사자와 경비업체의 말을 들어보자.

“조합원들의 안전은 뒷전이고 정비업체의 사장만을 보호하며, 진정 보호받아야할 조합원들에게 폭행, 욕설, 비웃음을 일삼는 120명의 안전요원과 경호원들. 이런 정기총회가 잘 끝난 것입니까? .. 여기는 법과 정의도 없습니까?” (서대문구, 구청장에게 바란다, 2008. 6. 17. 일부)

VS

“서 대리는 오히려 ‘우리들은 총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회장 내에서 공포감을 조성한다거나 물리력을 사용해 조합원들을 다치게 하는 일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뺄 되시는 분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김병조, 경호업체 가드탑시큐리티 서대민대리 ...”정비사업에서 물리적 충돌은 이제 그만”, 주거환경신문, 2006.6.15)

한다와 하지 않는다는의 첨예한 입장차이가 드러난다. 다른 이야기를 보자.

“신 조합측이 동원한 검은 양복차림의 사설경호원 30여명이 사무실 문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구 조합원 30여명과 이들이 동원한 군복차림의 사설경호원 20여명이 날카롭게 쏘아 보며 대치하고 있었다. ... 이를 막는 신 조합측 경호원들과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어 뒤에서만 지켜 보던 군복 차림의 구 조합측 경호원들이 투입된 다음부터는 양측 대립이 난투극으로 번졌다. ...”(김장훈, 가좌주공재건축 조합원들 난투극, 경인일보, 2004. 7. 16)

VS

“경찰의 제도권 밖에서 경비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에서 규제하는 경비업법에 준한 행동제한을 넘어서는 경우 경찰이 경비원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간혹 무등록업체의 경우, 조합장이 경비업법을 넘어서는 통제권을 요구할 때 이행하는 업체가 있다.”([인터뷰] 설악 박정훈 이사, 경호원도 인격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신문, 2010.2.9.)

한 지역에서는 경비업체 간의 폭력 사태가 불거졌다. 아래의 경비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의 제도권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경찰의 통제가 있지는 않았다. 그렇다. 이들은 무등록 업체였을 수 있다. 문제는 경찰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 말이다.

그래서 결국, 어떤 지역에서는 철거 당사자 중 경찰관계자를 찾아 나선다. 잘 될까?

“저번 배재고에서 2단지 총회하는 것 보니 경호원들이 중간 중간에 배치되어 강압적인 분위기 만들고 조합원 끌어낼려는 태도로 까만 양복입고 정자세로 있던데요, 가관이데요. 우리 2단지 조합원 중 검찰, 경찰, 사법부 근무자를 파악하여 사전협조를 요구하고 정당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순찰대를 조직하고 경호원 10명이 올시 200명 정도는 편성해야 하며, 사설 경호원이 30명이 올지 모릅니다...”(gdg1, 금번 총회시 사설 경호원 회의장 진입시 저지방안 건의, 고덕2단지조합원모임 홈페이지, 2007. 9. 15.)

VS

“반대파들이 신고하기 전부터 경호원들은 경찰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것을 모른데서 생기는 오해다... 경호원들이 무력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행정 절차가 갖춰져 있는 것이다.”(홍순재, 직업의 세계-경호원, 도시재생신문, 2010.2.9.)

그렇다. 경비업체들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의 비호 하에서 움직인다. 그런데 약간 이상하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감독을 받는 식당에서는 상한 음식이나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

관리감독의 근거가 업무 수행 자체의 합법성을 담보하지 않음에도 경비업체는 사업진행의 폭력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개 경찰의 관리감독을 말한다.

단순한 논리게임.

[증명하나] 경비업체는 경찰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사실)
현장에서 경비업의 폭력이 발생한다 (사실)
따라서, 경찰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없다 ! (결론)

우리는 이런 풍경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용역 경비원들, 해머 등 시정장구를 슬입공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 3층에서 4층 그 시정장치 해제할 진중입니다.”(용산참사 당일 오전 6시 24분부터 29분 사이의 경찰 교신 내용 중)



“참사가 있던 당일 경찰이 철거용역반과 합동으로 진압 작전을 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2009년 2월 9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 중)

3. 국회에서 숙면 취하시는 관련 법령: 신선한 우유 달랬더니 요구르트 만들고 있다

민초들이 이렇듯 현실에서 민간경비업체와 아옹다옹할 때 국회에서는 법령의 숙성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용산참사 이후 경비업법 개정안이 2009년 3월만 4건이 발의되었으나(김성순, 이정희, 유원일, 강명순), 이 법령이 상임위에서 다뤄진 것은 2010년 11월이었다.

4건의 경비업법 개정취지는 공히 ‘철거나 노사분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사용 등을 규제하자’ 는 내용이다. 이미 현장에서 충분히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경찰청이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통과시켜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도 통과가 안되고 있다.

문제는 국회 안의 이해관계로 보이는데, 실제로 최근 청목회 사건과 같이 경비업체의 사사로운 로비를 의심해봐야 한다.

실제로, 한 국회의원은,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 출소 후 열심히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회의원 허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2007. 6.)

라는 취지로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경비업법의 제한 조치가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신드롬’에 걸려들었다는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10년 4월 28일 2단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경비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1월 이를 확정했다.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경비업 진입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신규 경비업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시장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되고있는 현행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 자본금 요건을 5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시설 기준은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 후 현재 1조4000억 원 규모인 경비업 시장이 3배 이상 성장해 5조 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2011.1.19. 경비업과 휴양콘도미니엄사업 진입요건 완화] 일부

이제 우리는 국가경쟁력이라는 놈과도 싸워야 할 판이다.

우리는 때리면 맞고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도 **민생사범에서 경제사범으로 둔갑**해버렸다. 아무튼 이 정부는 못사는 민중들에게 국가경쟁력까지 신경쓰도록 하는 참 번거로운 정부가 되시겠다.

4. 경찰을 잡아야 경비업체 폭력 잡힌다: 몸통을 견지하는 우리의 자세

전반적으로 사정을 둘러보면 갑갑하다.

철거 당사자와 경비업체는 서로에게 외계인들이고,
법률을 만들라는 국회는 요구르트나 만들고 있고,
그 와중에 정부는 경비업 규제완화라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핵심은 간단하다. 민간경비업체와 경찰간의 동맹관계를 해체하는 것이다. 즉,

폴리스와 폴리시아 동맹의 해체가 필요하다.



경비업체는 사실상 경찰의 파견회사다. 경찰이 얼마나 일을 하기 싫어하는지,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남에게 넘기고 싶어하는지 알면 놀라 자빠질 거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경찰업무의 상당량을 벌써 민간용역 경비 업체에 이관하고, 경찰은 최소한의 공적 치안활동에만 전념함으로써 수준 높은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는 일반 수요자에게 보다 만족할만한 계약상 용역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경협력 치안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경찰청정보자료, 2002. 9. 10)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인데 경찰에게서 일상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들은 왜 그들의 월급을 대고 있을까라는 점이다. 게다가 최소한의 공적 치안활동만 하고 싶단다.

다시 말해서, 경찰의 이해관계(**일을 적게 하고 싶어요**)와 민간경비업체의 이해관계(**뒤편 시켜만 주십시오, 대신 돈주는 편 우리 편**)이 맞아 떨어지는 상황에선 경찰은 결코 중립적인 중재자가 될 수 없다.

실제로 민간경비업체의 불법 행위가 나타나면, 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일선 경찰서의 생활안전계 직원은 어찌될까.

그런데 이 보다 더 큰 내막이 있는 것 같다.

정부 각 부처의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2008년~2010년 8월 현재)를 보면 금융위원회 89

명, 경찰청 56명, 지식경제부 38명, 국세청 37명, 국정원 32명, 대검찰청 26명, 감사원 25명, 국토해양부 25명, 기획재정부 20명, 청와대 17명 등이다(세계일보, 2011.3.2. ‘퇴직 공직자 민간기업 취업 까다로워진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막강 금융위 다음의 재취업률을 보이는 것.

아~ 이들이 어디로 갔을까나. 참여연대 행정개혁센터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에 따르면 추측이 가능하다.

퇴직전 소속 부처 및 직무	취업업체 및 직위	비고	퇴직이 후 취업예정일까지 소요일	위반 의심 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령32조2항)
경찰청 분당경찰서장 경기청교통과장 화성경찰서장 경기청(총경)	(주)에스원 중부분부 고문	경비용역 및 안전시스템 구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1개월	(6호),(7호)
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경무기획국장 울산지방경찰청장	(주)에스원 감사	경비용역 및 안전시스템 구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2개월	(6호),(7호)
경찰청 경찰청 경비 1,2과장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청와대 101경비단장 경찰청 경비국장 경찰대학장(경무관) 경찰공제회 이사장	(주)씨큐어넷 사장	인터넷 보안 전문업체, 전자경비, 전자인식, 사이버 아파트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약1년	(7호)
경찰청 남부경찰서 정보과장 남대문경찰서 보안과장	KT텔레캅(주) 과장	통합 보안서비스, 무인경비시스템 보안, CCTV제공 업체	5일	(7호)

통상 4급 이상의 직위나 정무직들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 그 밑엔 어디에 취업했을까 볼 보듯 뻔한 것 아닌가.

경찰 직위에 있을 땐 자신들의 일을 나눠서 해주고, 퇴직 후엔 일자리 알선까지 해주는 민간경비업체가 경찰에게 어떤 존재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감이 오는 순간이다.

그래서일까,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참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각 경찰서의 생활안전계(과) 담당자 주소록은 그냥 애교 사항으로 봐줄 만 하다.



공지사항 Board

| 내용보기 |

제 목 :	[경찰청 인사]2011년 총경 보직인사	조회수 :	441
작성일 :	2011-01-10	첨부파일 :	📎

경찰청은 11.1.7(금) 총경급 329명에 대한 보직인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보직인사는 성과평가 결과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조직관리능력, 청렴도, 혁신의지 및 인사내신, 지휘관 추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세부리스트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우리 중 누가 경찰청의 보직인사에 관심을 둘까? 경비업체들은 관심이 지대하다. 자신들의 관련 업무가 아니어도 그렇다. 총경 보직인사이지, 일선의 경비업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조회수 441 회에 달하는 클릭수**를 보인다.

경찰 스스로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들은 민간경비업체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신들의 월급을 주는 국민들은 지나치게 멀지만, 뒷돈을 주거나 재취업을 시켜주는 경비업체는 너무나 가까운 존재다.

민간경비업체만 욕하지 말자. 그건 그들에게 너무 가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경비지도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명단을 보면, **기본교육기관 6곳 중 2곳(경운대, 광주대)이 대학교이며 45곳의 신입교육기관 중 18곳이 대학교다.**

이들은 인권기본 교육 같은 것 모른다.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경비업법, 경호학, 범죄학, 소방학**에서 경비지도사 문제가 출제된다.

몰라서 그러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앞세워 이득을 편취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것이다. 일단은 **경찰**이다.

용산참사 이후 세입자는 무엇이 변했는가

김종민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말 잔치로 끝난 용산참사 대책

- 정부대책, 국회 대책 등 많은 논의가 되었으나 제도적 변화는 거의 없음
- 전반적으로 법원 등에서 뉴타운재개발 취소, 세입자 권리 보호 등의 판결이 있기는 하였으나 현재는 역시 예전의 판례로 돌아가고 있음
- 용산참사 이후 세입자 권리의 변화는 결국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좋아진 것은 하나, 오히려 더 개악

1. 상가세입자 휴업보상액 3개월 → 4개월로 개선

2. 집주인이 직접 내 아라 - 도정법 개악

-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재개발 조합이 하게 되어있던 조항을 슬그머니 개정하여 가옥주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가옥주들이 세입자들을 개발 전 아내는 경향이 발생
- 한남뉴타운 등의 사례를 알 수 있듯이 공가로 두고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사례 발생, 개발지역의 슬럼화 발생
- 개발로 인해 주거권의 침해가 발생한 세입자가 보상 받지 못하고 겨나는 사례

3. 집중적 개발로 인한 전월세의 폭등

- 수년전부터 전월세 폭등에 대해 경고해 왔으나 무대책
- 서울지역 2년간 20% 상승 - 현재 더욱 강한 상승력
- 멸실 가구의 급격한 증가 - 공급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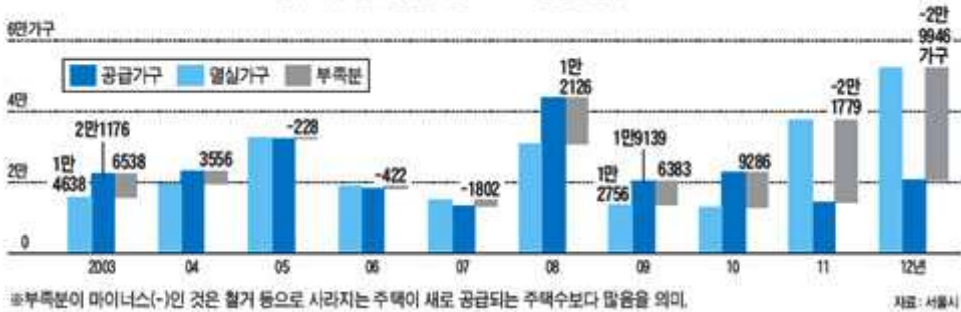
[표 1] 정비사업으로 인한 2006년 이후 멸실/ 공급 전망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멸실	13,525	24,973	18,098	31,061	48,689	136,346
공급	9,707	12,145	11,669	11,074	22,539	67,134

[표 2] 서울시 멸실가구와 공급가구(2010~2012년은 추정치)

서울시 멸실가구와 공급가구

단위: 가구, 괄호안은 부족분, 2010-2012년은 추정치.



- 중대형 중심의 주택 공급
- 임대주택 -> 보금자리 주택

진보진영의 대책

1) 주택세입자

-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의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하는 것
-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조합이 보상해주도록 하는 것
-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을 높이는 것

2) 상가세입자

- 임대상가 / 임시상가 시설의 공급
- 휴업보상액의 현실화 (재래시장 특별법에 준하여 편성)
- 시설투자비 / 퇴거비 등의 현실화

3) 지구단위계획-재건축사업에서의 세입자 대책

- 법 적용의 평등성에 위배
- 개발방식이 아니라 개발 규모에 따른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되어야 함

4) 뉴타운재개발 등의 중단 및 전면재검토

- 전세값 안정
- 세입자 대책 제도화

5) 전월세 특단의 대책

- 전월세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 보금자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일시·장소 : 3월 11일(금) 오후 2시. 홍대앞 철거건물 두리반
공동주최 : 두리반대책위원회, 금속노조 기륭분회, 두리반 3층강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서울시당,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자립음악생산자모임, 전국노점상총연합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서울시당,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아평화위원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주 관 : 두리반대책위원회
기 획 : 혁명적육식주의자동맹
웹 자 보 : _NO COMMENT

<http://cafe.daum.net/duriban>